



20 년 일

- ※ 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"□"내에 "v" 표시 합니다.

성명	(인)	주민등록번호		*약정서 설명듣고 사본 받았음
주소				확인직원 (인)

보증채무 최고액	금 원			*약정서 설명듣고 사본 받았음
보증개시일	☐ 20 년 월 일 ☐ 대출실행일을 보증개시일로 하기로 합니다.			
보증만료일	☐ 20 년 월 일 ☐ 대출만료일을 보증만료일로 하기로 합니다.			
성명	(인)	주민등록번호		
주소				확인직원 (인)

모기지신용보증(MCG) 및 건축·개량자금보증의 물적 담보제공자				
성명	(인)	주민등록번호		*약정서 설명듣고 사본 받았음
주소				확인직원 (인)

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은행 귀중 본인은 본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되는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금의 이자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, 신용보증약정서 제 4 조에 의거 귀 공사에 납부하여야 할 보증료 등을 대출금 이자 자동이체 출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수납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하며, 보증료 자동이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귀 공사에서 정한 방법 및 대출은행의 자동이체 약관을 따르도록 하겠음	
신청인 (신용보증 의뢰인)	(인)

제 1 조 (준거법령 등)

-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, 동 시행령, 전자서명법, 전자거래기본법 등 전자거래관련법률, 공사의 운영규정 및 보증에 관한 규정이 이 약정의 일부로 됨을 승인하고 이를 준수·이행하겠음
- ② 본인은 인터넷을 통한 보증약정체결시에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대출거래은행 인터넷 뱅킹약관이 준용됨을 확인함.
- ③ 한국주택금융공사법, 동 시행령, 전자서명법, 전자거래기본법 등 전자거래관련 법률, 공사의 운영규정 및 보증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이 약정의 해당조항이 변경된 것으로 보기로 함.

제 2 조 (보증의 부탁)

- ① 본인은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관리·운영하는 귀 한국주택금융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함)에게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에 의한 신용보증(이하 “보증”이라 함)을 아래와 같이 부탁함.

1. 보증원금	금	원
2.보증개시일	☐ 20 년 월 일 ☐ 대출실행일을 보증개시일로 하기로 합니다.	
3.보증만료일	☐ 20 년 월 일 ☐ 대출만료일을 보증만료일로 하기로 합니다.	

4. 종속채무 : 제 1 조의 준거법령 및 귀 공사와 채권자간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제 1 호의 보증원금에 추가하여 부담하는 보증 종속채무
5. 이 약정서와 추후 보증조건변경신청서에 따른 조건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는 보증채무의 증가분과 기한연장에 의한 채무 및 동 종속채무
- ② 제 1 항의 "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"라 함은 제 1 항 제 2 호 내지 제 3 호의 기간 중에 발생하는 주채무를 말하며, 귀 공사는 그 주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기로 함.

제 3 조 (보증방법 등)

- ① 귀 공사는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에 대해 개별보증 방법으로 보증을서를 발급하여 보증을 할 수 있기로 하며, 보증계약의 내용은 귀 공사와 채권자 간에 정하는 바에 따르겠음.
- ②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주채무가 분할대출되는 경우에는 귀 공사가 보증하는 보증원금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보증하여도 이의 없겠음.

제 4 조 (보증료 등)

- ① 귀 공사에게 보증료, 연체보증료, 추가보증료의 납부와 귀 공사의 보증료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 1 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귀 공사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르겠음.
- ② 귀 공사가 제 1 조의 준거법령 등이 변경됨에 따라 제 1 항의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그에 따르겠음.
- ③ 보증료 납부 방법 및 보증료 환급금 입금 계좌

1. 납부주기	☐ 일시납	
	☐ 연납	☐ 납부일(대출개시일) : 월 일) ☐ 매년 대출실행일을 납부일로 하기로 합니다
2.보충료 환급금 발생시 입금계좌 (선택사항)	☐ 대출금 이자 자동이체 출금계좌와 동일 ☐ 예금주 ()은행, 계좌번호 -	

※ 단, 보증료를 특정계좌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의 보증료 환급방식을 따른다.

제 5 조 (주채무 이행의무)

귀 공사가 보증한 주채무 원금과 종속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변제하여 귀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.

제 6 조 (사전구상)

- ①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귀 공사로부터의 통지, 최고 등이 없더라도 귀 공사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을 귀 공사의 보증채무이행 전에 상환하겠음. 다만, 제 6 호 중 이 약정서 제 4 조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공사가 사전구상을 행사하기 전에 본인과 연대보증인에게 그 지체사실을 통지, 최고하기로 함.
 1. 압류, 가압류, 가처분, 경매의 신청 또는 파산,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, 또는 청산에 들어간 때
 2. 폐업하였거나 6 개월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
 3. 조세공과를 체납하여 압류를 당한 때
 4.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때
 5. 신용정보법 제 25 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"신용정보 관리규약"에서 정한 연체, 대위변제,대지급, 부도, 관련인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
 6. 이 약정서 제 4 조, 제 5 조, 제 8 조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
 7. 귀 공사의 본인을 위한 보증의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 그 중 어느 채권자로부터라도 귀 공사와 채권자간의 보증계약에 정한 보증사고 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 청구가 있을 때
 8. 전 각 호 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
- ② 제 1 항의 경우에 본인 및 연대보증인은 귀 공사에 대한 상환채무 또는 주채무에 대한 담보의 유무에 불구하고 보증채무이행전에 귀 공사가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의 없겠으며, 귀 공사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 및 주채무의 면책을 청구하지 아니하겠음
- ③ 제 1 항에 의한 사전상환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방법으로 처분하더라도 이의가 없겠으며 이에 동의함.
 1. 귀 공사가 보증한 채무를 즉시 변제하는 것
 2. 귀 공사가 채권자와의 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채무의 이행시까지 보관하다가 보증채무이행 관련 구상채권의 변제에 충당 사용하는 것.
- ④ 제 1 항의 사전상환금을 제 3 항 제 2 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전상환금과 이에 대하여 사전상환일로부터 귀 공사의 보증채무이행

일까지 귀 공사가 보증채무이행시 적용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의 합계액이 귀 공사에 상환되는 것으로 보기로 함.

제 7 조 (통지의무)

- ① 본인은 주채무 이행의 청구를 받거나 주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곧 그 사실을 귀 공사에 통지하겠음.
- ② 채권자와 본인사이에 주채무의 공탁, 경개, 상계, 면제, 혼동, 시효의 완성 또는 담보물건의 변동 등 이 약정에 의한 귀 공사의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은 곧 그 사실을 귀 공사에 통지하겠음.
-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통지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귀 공사가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변제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그 금액에 대한 상환채무를 부담하며 곧 변제하겠음.

제 8 조 (담보 등)

- ① 본인, 연대보증인, 물상보증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에는 본인, 연대보증인, 물상보증인 채권보전을 위한 공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겠음.
- ② 담보는 귀 공사가 추심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을 제 12 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, 본인은 나머지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곧 변제하겠음.

제 9 조 (보증채무이행 및 통지 등)

- ① 귀 공사의 보증채무이행방법, 시기, 금액 등은 제 1 조의 준거법령 및 채권자와의 보증계약에 근거한 귀 공사의 결정에 위임함.
- ② 귀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그 사실을 본인 및 연대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 통지한 경우에는 그것이 연착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도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기로 함.
- ③ 귀 공사가 보증채무이행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는 본인이 채권자와 체결한 계약의 조항을 적용하는 외에 이 약정의 각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동의함.

제 10 조 (보증채무이행금 등의 상환)

- ① 귀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제 1 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귀 공사가 정한 율에 의한 손해금을 상환하겠음.
- ② 제 1 항의 손해금 계산방법은 제 1 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귀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겠음.
- ③ 제 1 항의 상환금 이외에 다음 각 호의 비용도 제 1 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귀 공사가 정한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상환하겠음.
 1. 귀 공사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
 2. 귀 공사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,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

제 11 조 (가지급금 등)

귀 공사의 이 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,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이에 대한 귀 공사 소정의 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음.

제 12 조 (변제 등의 충당순서)

변제 또는 귀 공사의 회수액이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제 1 조의 준거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충당할 수 있기로 함.

제 13 조 (위험부담, 면책조항 등)

- ① 본인, 연대보증인, 물상보증인은 귀 공사에 제출한 증서, 기타 문서가 사변, 재해, 수송도중의 사고 등 귀 공사의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분실, 손상, 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에는 귀 공사의 장부, 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고, 귀 공사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함
- ② 증서, 기타 문서의 인영이 신고한 인감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상 위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그 위조, 변조, 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본인, 연대보증인, 물상보증인이 부담하겠으며, 증서 또는 기타 문서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겠음.

제 14 조 (신고사항의 변경)

- ① 인장, 명칭, 상호, 대표자 주소, 기타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겠음.
- ② 제 1 항의 신고를 해태함으로써 귀 공사로부터 통지 또는 송부된 서류 등이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 도달하여야 할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도 이의 없겠음.

제 15 조 (소송관할 합의)

이 약정에 의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소송의 1심 법원은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아래의 법원 중 귀 공사가 선정하여 제소하는 법원의 관할로 하기로 합의함.

1. 서울중앙지방법원
2. 귀 공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
3. 귀 공사의 이 약정에 의한 보증거래 지사 또는 제 9 조에 의거 보증채무를 이행한 귀 공사의 지사 소재지 관할법원
4. 귀 공사가 채권관리를 위하여 다른 지사로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 이관받은 지사 소재지 관할법원

제 16 조 (다른 약정과의 관계)

- ① 본인이 귀 공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보증을 부탁하는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보증은 이 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함.
- ② 본인이 귀 공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장래 따로 보증을 부탁하는 약정이 있을 경우에도 제 1 항에 준하겠음.

제 17 조 (연대보증인, 물상보증인)

- ①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본인과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함.
- ② 제 1 항에 불구하고 「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 2 조 제 1 호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인은 따로 기재된 보증채무최고액과 보증기간에 따라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함. 다만, 보증기간 이내에 제 6 조 제 1 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채무이행책임을 부담함.
- ③ 귀 공사가 보증한 주채무에 대하여도 보증한 연대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이 그 주채무를 이행한 경우 연대보증인, 물상보증인은 귀 공사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, 연대보증인, 물상보증인은 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대위에 의하여 귀 공사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본인과 귀 공사 사이에 이 약정에 의한 잔존채무가 있는 동안에는 귀 공사에 앞서서 행사하지 아니하겠으며, 귀 공사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귀 공사의 다음으로 변제받기로 함.
- ④ 연대보증인, 물상보증인이 본인과 귀 공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따로 보증을 부탁하는 약정에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은 이 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기로 함.
- ⑤ 연대보증인, 물상보증인이 본인과 귀 공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장래 따로 보증을 부탁하는 약정에 보증할 경우에도 제 3 항에 준하겠음.
- ⑥ 연대보증인, 물상보증인이 동의를 한 때나 동등한 자격 이상의 연대보증인, 물상보증인 교체 또는 귀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의 구상 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을 때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귀 공사는 연대보증인, 물상보증인을 변경할 수 있기로 함.

제 18 조 (대위담보권에 관한 특약)

본인, 연대보증인, 물상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설정한 담보를 귀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대위한 경우에 그 담보권으로부터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변제받는 것을 동의함.

제 19 조 (신용정보의 활용 동의)

귀 공사가 보증 등을 위하여 수집관리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에 대하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 22 조 제 1 항 제 12 호에서 정한 신용조사 및 신용자료의 종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귀 공사가 활용하여도 이의 없겠음

제 20 조 (보증기한 자동연장)

집단승인의 방식으로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의 보증기한 만료시 공사는 보증기한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신청서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제 1 조의 준거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기한의 연장을 처리할 수 있기로 함.

제 21 조 (인터넷 보증시 본인확인)

- ① 인터넷 보증시 본인확인은 전자서명법의 인증서 등 본 보증약정관련 대출거래은행이 정한 방법 및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함.
- ② 제 1 항의 본인확인후 보증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보증약정은 본인이

약정한 것으로 보고, 공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그 보증약정으로 인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아니함.

- ③ 공사는 보증신청 및 실행, 본 보증약정관련 대출실행과정에서 본인이 입력한 내용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의 추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.
- ④ 공사는 보증신청 및 실행, 본 보증약정관련 대출실행과정에서 본인이 입력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기록, 보관할 수 있음.

제 22 조 (전세보증금 우선변제)

동일한 보증목적물에 대하여 공사의 “전세자금보증”과 주택도시보증공사(이하 “HUG”라 함)의 “전세보증금 반환보증”을 중복 가입한 경우, 공사나 대출은행이 임대인 또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·보증이행금을 우선변제 받아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주채무 또는 보증채무이행금 등에 변제 충당하는 것을 동의함.

제 23 조 (전세자금보증 이용 제한)

본인은 전세자금보증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부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겠음.

1. 본인과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. 이하 같음)가 고가주택(시가 9 억원 초과. 이하 같음)을 취득, 2 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 내 3 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고 있는 경우
2. 기한연장 시 본인과 배우자가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
3. 보증목적물(고가주택 보유자 또는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 내 3 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자임에도 예외로 보증을 이용한 경우에는 고가주택 또는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 내 3 억원 초과 아파트 포함)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